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029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5년 8월 11일
4.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II . 제안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를 구체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III .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함(안 제3조)
- 나.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안 제11조)
- 다. 위원장 대행 체제를 보강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 신설(안 제12조)

Ⅳ.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이를 5년간 연장하고, 기금운용위원회와 관련하여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부재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¹⁾ 및 동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에 설치되었으며, 서울시는 종전에 동 기금과 유사한 목적으로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자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약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약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약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를 동 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 중 통합계정은 회계 및 기금 간의 수지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재원을 상호 융통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2025년에는 당초 1조 5,690억 2천 8백만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이었으나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281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한 1조 5,971억 9천 6백만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 수입계획 >			
구 분	1차변경 (A)	2차변경 (B)	증 감 (B - A)
계	1,569,028	1,597,196	28,169
융자금 원리금회수	15,250	15,250	-
예수금	1,332,989	1,350,414	17,425
예탁금 원금회수	13,970	23,970	10,000
예치금회수	144,036	144,741	705
이자수입	62,783	62,822	39

< 지출계획 >				
구 분		1차변경 (A)	2차변경 (B)	증 감 (B - A)
계		1,569,028	1,597,196	28,169
재무 활동	소 계	1,569,021	1,597,189	28,169 (1.8%)
	예수금 원금상환	160,473	160,473	-
	예수금 이자상환	71,282	71,282	-
	예탁금	1,242,200	1,261,800	19,600
	예치금	95,066	103,635	8,569
	행정 운영 경비	소 계	7	7
	기본경비	7	7	-

- 한편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원리금 상환과 공사·공단채의 상환을 위한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2025년에는 당초 5,474억 6천 7백만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이었으나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전입금 적립 등으로 인해 2,978억 4천 3백만원이 증가한 8,453억 1천만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 수입계획 >			
구 분	당 초 (A)	변 경 (B)	증 감 (B - A)
계	547,467	845,310	297,843
전 입 금	-	285,367	285,367
이자수입	38,568	40,770	2,202
예탁금회수	80,000	80,000	-
예치금수회	428,899	439,173	10,274

< 지출계획 >				
구 분		당 초 (C)	변 경 (D)	증 감 (D - C)
계		547,467	845,310	297,843
재무동 활	소 계	547,236	845,045	297,809 (증 54.4%)
	차입금 원금상환	414,746	419,746	5,000 (증 1.2%)
	차입금 이자상환	131,920	134,430	2,510 (증 1.9%)
	예치금	570	290,869	290,299 (증 50,929.6%)
행안경 정용비	소 계	231	265	34 (증 14.7%)
	기 경 본 비	231	265	34 (증 14.7%)

3.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 이와 관련하여 지방기금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 중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해서는 그 존속기한을 해당 기금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하되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존속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지방기금법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시는 2025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2025.5.7.~5.9.)에서 동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의결하였음.
- 안 제3조는 이와 같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회계 및 기금 간 수지불균형 조정 기능과 서울시 및 산하 공기업 채무 관리 기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임.
- 한편 안 제11조는 동 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청년위원 의무할당,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 간사 및 서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위원회 운영시의 기준이 되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음.
- 그리고 안 제12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대부분 서면 심의로 진행되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동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안을 다루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안 제12조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입법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

[참고자료] 최근 3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내역

○ 2023년

구 분	방 법	개최일자	안건명	회의결과	참석 인원
제1차	대면	2023.3.9.	- 2022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 -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10명
제2차	서면	2023.5.24.	- 2023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10명
제3차	서면	2023.7.21.	-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성과분석	원안가결	9명
제4차	서면	2023.10.12.	- 2023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10명
제5차	서면	2023.10.27.	- 2023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10명

○ 2024년

구 분	방 법	개최일자	안건명	회의결 과	참석 인원
제1차	서면	2024.2.28.	- 2023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결산(안)	원안가결	12명
제2차	서면	2024.5.21.	- 2024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10명
제3차	서면	2024.6.24.	- 2024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10명
제4차	서면	2024.7.17.	-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성과분석	원안가결	10명
제5차	서면	2024.10.25.	-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9명
제6차	서면	2024.12.18.	- 2024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9명

○ 2025년('25.7월말 기준)

구 분	방 법	개최일자	안건명	회의결 과	참석 인원
제1차	서면	2025.2.19.	- 2024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결산(안)	원안가결	9명
제2차	서면	2025.3.31.	- 2025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9명
제3차	서면	2025.5.22.	- 2025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2025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11명
제4차	서면	2025.7.30.	-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성과분석	원안가결	9명